

2.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15號 1992. 10. 2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호”를 “제9호”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7조중 “영 제16조”를 “영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1항 관련)

1. 유원지설치사업

-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식당 및 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대중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별표 2]

토지형질변경허가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3항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공동주택·기숙사·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 제12호·제14호·제15호 및 제3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3호·제17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
- 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에 한한다) 및 자동차 관련시설(중기관련시설을 포함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중기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건설부 제공〉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